

의안번호	제 545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2021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20년 10월 5일

2021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545
----------	-----

제출연월일 : 2020년 10월 5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 부지 취득**은 충북 바이오·반도체·이차전지 산업 등이 세계적 메카로 도약하기 위해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공모한 **다목적 방사광가속기**를 **충북 오창에** 유치하는 성과를 거둬, 향후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미래 신산업 **원천기술 확보**로 지역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방사광가속기 부지**를 취득하고자 함.
-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신축**은 도 주요기관의 중부권 편중으로 인한 북부권의 상대적 **소외감 해소와 균형발전**을 기하고, 연인원 1만3천여명 교육생('19년 기준)의 북부권 방문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및 함께하는 도정을 실현하고자 **충청북도자치연수원**을 북부권에 신축하고자 함.
- **도유림 행정재산 취득**은 매년 감소되는 산림면적 확보를 통해 **대단위 도유림 경영기반 마련**으로 지속가능한 산림보존·관리 정책 실현과 탄소흡수원의 안정적인 확충, 미세먼지 저감, 산림휴양·복지증진 등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사유토지를 **연차적으로('19년~22년 500ha)** 매입하려 함.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 재산의 취득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 부지 취득》

- 위 치 : 청주시 오창읍 후기리 산16-1 일원(오창테크노폴리스산업단지)
- 사업기간 : 2021년 ~ 2027년
- 매입규모 : 543,145㎡
- 사 업 비 : 1,600억원(도 800, 청주시 800)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신축》

- 위 치 : 제천시 신백동 27-1 일원
- 사업기간 : 2020년 ~ 2023년
- 신축규모 : 7,739.48㎡
 - ※ 3개동 : (본관동) 지하1층 지상3층 (식당동) 지상3층 (강당동) 지상1층
 - ※ 주요시설 : 대강당, 강의실, 회의실, 사무실, 식당, 직원숙소 등
- 사 업 비 : 404억원 ※ 총사업비 467억원(토지보상비 63억원 제천시 부담)
 - ※ 신축예정부지(101,086㎡)는 제천시에서 무상임대 제공
(道-제천 간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이전 업무협약, '20.7.20.)

《도유림 행정재산 취득》

- 위 치 :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미원리 산4-2 등 14필지
- 사업기간 : 2021년
- 매입규모 : 745,546㎡
- 사 업 비 : 22억원

3.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 별첨

4. 관계법령 : 별첨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제14조
-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8조

2021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14-2)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건, m²,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 득 기	취 득 사유	취득재산 전소유자	비고	
	지목	소 재 지						면 적
계	토지	2건	1,288,691	162,187,359				
	건물	1건	7,739.48	40,386,000				
	기타							
1	토지	73필지	543,145	160,000,000	21년(계약) 27년(취득)	오창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부지 확보	원건설	매입
		후기리 산16-1	32,746.4	9,496,456	"	"	"	"
		후기리 산16-2	3.0	900	"	"	"	"
		후기리 산17	7,588.0	2,276,400	"	"	"	"
		후기리 산18-1	75,782.0	22,035,930	"	"	"	"
		가좌리 353	202.0	60,600	"	"	"	"
		가좌리 364	277.1	83,130	"	"	"	"
		가좌리 365	883.7	265,110	"	"	"	"
		가좌리 366	565.4	169,620	"	"	"	"
		가좌리 367	574.1	172,230	"	"	"	"
		가좌리 368	292.9	87,870	"	"	"	"
		가좌리 369	1,129.9	338,970	"	"	"	"
		가좌리 370	279.3	83,790	"	"	"	"
		가좌리 382	324.9	97,470	"	"	"	"
		가좌리 383	585.0	175,500	"	"	"	"
		가좌리 383-1	390.0	117,000	"	"	"	"
		가좌리 384	961.9	288,570	"	"	"	"
		가좌리 385	527.6	158,280	"	"	"	"
		가좌리 387	411.1	123,330	"	"	"	"
		가좌리 388	641.0	192,300	"	"	"	"
		가좌리 389	96.0	28,800	"	"	"	"
가좌리 390	631.0	189,300	"	"	"	"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전소유자	비고
	지목	소 재 지	면 적					
1	토지	가좌리 391	66.0	19,800	21년(계약) 27년(취득)	오창 다목적 방시광 가속기 부지 확보	원건설	매입
		가좌리 392	73.0	21,900	"	"	"	"
		가좌리 393-1	912.0	273,600	"	"	"	"
		가좌리 393-2	1,763.2	528,960	"	"	"	"
		가좌리 394	615.0	184,500	"	"	"	"
		가좌리 395	62.2	18,660	"	"	"	"
		가좌리 571	2,340.1	702,030	"	"	"	"
		가좌리 572	151.1	45,330	"	"	"	"
		가좌리 592	246.7	74,010	"	"	"	"
		가좌리 산9-1	3,361.2	1,008,360	"	"	"	"
		가좌리 산12-1	31,481.7	9,129,693	"	"	"	"
		가좌리 산12-2	3.0	900	"	"	"	"
		가좌리 산13	33,359.0	9,674,110	"	"	"	"
		가좌리 산13-1	268.0	80,400	"	"	"	"
		가좌리 산14	21,818.0	6,545,400	"	"	"	"
		가좌리 산14-1	200.0	60,000	"	"	"	"
		가좌리 산14-2	83.0	24,900	"	"	"	"
		가좌리 산15	14,971.0	4,491,300	"	"	"	"
		가좌리 산15-1	268.0	80,400	"	"	"	"
		가좌리 산15-2	11,079.3	3,323,790	"	"	"	"
		가좌리 산16	28,959.0	8,687,700	"	"	"	"
		가좌리 산17	4,026.6	1,207,980	"	"	"	"
		가좌리 산21	1,564.4	469,320	"	"	"	"
		가좌리 산22	116.2	34,860	"	"	"	"
		후기리 253-8	1,118.1	335,430	"	"	"	"
		후기리 253-9	208.0	62,400	"	"	"	"
후기리 257	377.9	113,370	"	"	"	"		
후기리 258	3,418.0	1,025,400	"	"	"	"		
후기리 259	4,694.0	1,408,200	"	"	"	"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전소유자	비고
	지목	소 재 지	면 적					
1	토지	후기리 260	860.0	258,000	21년(계약) 27년(취득)	오창 다목적 방시광 가속기 부지 확보	원건설	매입
		후기리 261	4,717.0	1,415,100	"	"	"	"
		후기리 262-1	2,370.0	711,000	"	"	"	"
		후기리 262-2	3,540.0	1,062,000	"	"	"	"
		후기리 364	1,947.0	584,100	"	"	"	"
		후기리 365	2,454.0	736,200	"	"	"	"
		후기리 366	13.8	4,140	"	"	"	"
		후기리 602	3,894.5	1,168,350	"	"	"	"
		후기리 621	650.5	195,150	"	"	"	"
		후기리 산18-1	28,850.1	8,366,529	"	"	"	"
		후기리 산18-3	298.0	89,400	"	"	"	"
		후기리 산18-4	2,737.6	821,280	"	"	"	"
		후기리 산23	41,962.1	12,168,951	"	"	"	"
		후기리 산24	20,628.0	6,188,400	"	"	"	"
		후기리 산25-1	19,495.2	5,848,560	"	"	"	"
		후기리 산25-2	1,983.0	594,900	"	"	"	"
		후기리 산28-1	56,077.9	16,262,591	"	"	"	"
		후기리 산28-6	12,072.4	3,621,720	"	"	"	"
		후기리 산29	3,516.8	1,055,040	"	"	"	"
		후기리 산30-1	30,897.9	9,269,370	"	"	"	"
		후기리 산31-1	4,243.1	1,272,930	"	"	"	"
후기리 산31-4	302.7	90,810	"	"	"	"		
후기리 산31-5	7,137.4	2,141,220	"	"	"	"		
	건물							
	기타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전소유자	비고
	지목	소 재 지	면 적					
2	토지							
	건물	제천시 신백동 27-1일원	7,739.48	40,386,000	2023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제천) 북부권 이전	-	신축
	기타							
3		14필지	745,546	2,187,359	2021	도유림 확대조성	사유지	매입
	토지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미원리 산4-2	4,610	101,430	"	"	고복임 외 8명	"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미원리 164-3	546	24,360	"	"	김홍순	"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미원리 170-1	172	8,410	"	"	서수남	"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미원리 170-3	264	19,360	"	"	서수남	"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미원리 240	233	17,090	"	"	이규창	"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미원리 242	1,128	81,350	"	"	지병권	"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미원리 237-4	136	9,970	"	"	여형준	"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미원리 243	1,287	99,100	"	"	지병권	"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미원리 244	1,330	199,950	"	"	한의남	"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미원리 238-1	1,440	79,200	"	"	고복임 외 8명	"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미원리 238-2	62	4,550	"	"	여형준	"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미원리 238-3	324	19,800	"	"	고복임 외 8명	"
		충주시 살미면 세성리 산24-1	329,370	966,210	"	"	학교법인 충주미덕 학원	"
		증평군 증평읍 울리 산73-1	404,644	556,579	"	"	민선홍 외 5명	"
건물								
기타								

관계 법령 발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p>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p> <p>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p> <p>가. 취득의 경우 :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p> <p>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p> <p>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p> <p>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p> <p>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p> <p>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p> <p>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p>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p>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지사가 다음 연도 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충청북도의회(이하“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p> <p>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p> <p>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5호 서식)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6호 서식) 3. 양여계약서(별지 제17호 서식)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8호 서식) 5. 교환계약서 (별지 제19호 서식)